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무경찰에 대한 영창 징계 폐지〉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41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12. 1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군인사법」에서 이미 폐지된 영창제도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무경찰대법”이라 함)과 같은 전환복무 관련 개별법에 존치하고 있으므로 인해 위헌 논란 등 군 영창제도의 폐지 의미를 무색하고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병의군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병역법」과 병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과 충돌할 여지도 있음.

첫째,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군인사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이 폐지된 지금, 의무경찰대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을 폐지하여 법률 상호 간의 체계 적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셋째, 국방부가 2021년 이후 전환복무자의 모집을 중단하고 사실상 전환복무제도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법적 실익이 상실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의5 및 제5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경찰대 대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복무기강교육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정직 및 영창(營倉) 기간</u>	2. <u>정직</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직한 때와 <u>영창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때 및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에는</u>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 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u>복무</u>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징계) ①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는 강등, 정직, <u>영창</u> , 휴가 제한 및 근신(謹慎)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징계) ① ----- ----- <u>복무기강교육</u>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영창</u> :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대·함정(艦艇) 내 또는 그 밖의 <u>구금장소(拘禁場所)</u> 에 <u>구금하는 것</u>	3. <u>복무기강교육</u> ----- ----- <u>장소에 설치된 교육시설에서 복무 규율과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u>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② <u>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으로 그 징계처분을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u>	<삭제>
제6조(소청) ① (생략)	제6조(소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u>다만,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u>	② ----- ----- ----- ----- <u><단서 삭제></u>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로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 대신 의무경찰대에 소속되어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임.

2020년부터 입영대상자가 2만~3만명 부족해지는 것¹⁾ 등이 고려되어 2017년 7월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5년) 및 경찰 인력 증원이 국정과제로 설정²⁾되었으며, 2021년 6월 모집하여 2021년 11월에 입영한 기수(복무기간 18개월)가 전역한 2023년 5월 17일 이후에는 의무경찰 대원이 없음.

영창제도는 의무경찰외에도 현역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군인사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병사의 인권 신장을 위해 동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0년 2월 4일 공포되었으며, 2020년 8월 3일 시행됨³⁾.

1) KTV 국민방송 2016년 5월 17일 방송, “국방부 ‘2023년부터 현역자원 병역특례 폐지”

2) 의무경찰 단계적 축소 및 경찰인력 증원

구분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의경규모	25,911명	19,495명	8,967명	4,152명	1,045명	폐지

자료: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96면, 2021년 5월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024054) 중 개정안 제57조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생략)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營倉),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영창은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 4. (생략) <신설> <신설>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1. (현행과 같음) 2. 군기교육이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 6. (생략) ③ 병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사유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개정 전 「군인사법」 중 영창 부분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⁴⁾.

개정안은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무경찰제도는 현역병의 전환복무에 해당하는데 현역병에 대한 징계에서 영창제도가 삭제되었다는 점,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효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보임.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영창 처분은 101명에 대해 실시되었는데, 2018년부터는 영창처분의 집행방법을 근신처분과 동일하게 부대 내 대기하며 사회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4)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157, 2018헌가10 결정 주요내용

심판대상조항은 병의 복무규율 준수를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군의 지휘명령체계의 확립과 전투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병에 대하여 강력한 위하력을 발휘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징계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불이익 외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까지 그 내용으로 삼고 있어 징계의 한계를 초과한 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그 실질이 구류형의 집행과 유사하게 운영되므로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형사상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영창처분이 가능한 징계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기준이 불명확하여 영창처분의 보충성이 담보되고 있지 아니한 점, 심판대상조항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지만, 모두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되거나 소속된 것으로 형사절차에 견줄만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신구금과 같이 징계를 중하게 하는 것으로 달성되는 데 한계가 있고, 병의 비위행위를 개선하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 등으로 가능한 점, 이와 같은 점은 일본, 독일,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점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군대 내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고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나, 심판대상조항으로 과도하게 제한되는 병의 신체의 자유가 위 공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의무경찰 징계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강 등	2명	-	-	-	2명
정 직	1명	1명	-	-	2명
영 창*	56명	33명	11명	1명	101명
휴가제한	144명	56명	20명	12명	232명
근 신	82명	17명	12명	-	111명

※자료: 경찰청

* '18년부터 '영창' 처분의 집행방법을 '부대 내 대기하며 사회봉사활동 등을 실시' 하는 방식('근신' 처분과 동일)으로 개선

참고로, 경찰청은 의무경찰 제도가 '23. 5월 이미 폐지되어 더 이상 복무하는 의무경찰이 없는 만큼,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실익이 크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